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성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96
----------	-------

발의연월일 : 2025. 7. 16.

발 의 자 : 김성회 · 남인순 · 윤종오
문진석 · 이광희 · 백혜련
전종덕 · 박지원 · 이성운
김영환 · 박민규 · 최기상
박홍배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약 38년간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이에 헌법이 시대 변화와 사회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 개혁과 국가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헌법의 미비점과 공백을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에만 의존하는 현재 상황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그럼에도 우리 헌법이 가진 높은 수준의 경성(硬性)적 특성은 우리 사회의 개헌에 대한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임. 개헌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 탓에, 헌법 개정의 기회가 드물게 찾아올 때마다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세력들이 자신들의 헌법적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려 함으로써, 오히려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따라서 헌법 개정의 논의를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단계적·점진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제정법은 개헌안의 발의와 의견 수렴 과정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합리적인 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헌법개정 절차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함(안 제1조).

나. “헌법개정제안안”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헌법개정제안안의 입안 과정을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헌법개정 관련 국민청원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헌법에 명시된 헌법개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개정 및 개정안 제안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개정 절차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헌법개정 제안안”이란 「大韓民國憲法」 제128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 발의를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헌법개정을 위한 의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헌법개정 및 헌법개정안 제안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4조(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제안안 입안을 위하여 「국회법」 제45조의2에 따라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둔다.

제5조(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 및 헌법개정제안안 입안에 관한 국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5조의3에 따라 국회에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를 둔다.

제3장 헌법개정제안안 입안

제6조(헌법개정제안안 입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제안안을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직전년도 11월 30일까지 의결로써 입안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헌법개정제안안이 위원회에서 마련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보고기한을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헌법개정제안안의 공고) 국회의장은 헌법개정제안안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국민에게 공고하고, 대통령과 각 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4장 헌법개정 관련 청원

제8조(헌법개정 관련 청원의 제출) ①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헌법개정 관련 청원(이하 “국민개헌청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회규칙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50만명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민개헌청원은 청원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국민개헌청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④ 국회는 국민개헌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에 관한 사항과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국민개헌청원의 심사) ①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국민개헌청원 심사를 위하여 국민개헌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② 국민개헌청원심사소위원회가 헌법개정제안안 작성을 위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로 채택한 국민개헌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장 헌법개정 절차

제10조(헌법개정안의 발의)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1조(국회의원 발의 헌법개정안의 이송)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발의 이후 지체 없이 대통령에게 이송한다.

제12조(헌법개정안의 공고) 대통령은 발의된 헌법개정안을 이송받은 후 지체 없이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회의 헌법개정안 의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4조(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①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국민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15조(헌법개정 확정 공포) 제14조에 따라 헌법개정안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